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요 약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023. 10. 24 공포)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송 요청 방법,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 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관련 자료제공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의 범위,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과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 관련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최근에는 손해사정제도(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등),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음

○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023. 10. 24 공포)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24. 3. 5)
 -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4. 4. 15일
-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024. 2. 13 공포)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24. 3. 27)
 -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4. 5. 7일
- 최근에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및 보험협회 업무 범위 추가 관련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였음(2024. 4. 1)
 -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4. 5. 13일
- 이하에서 해당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봄

○ 2024. 3. 5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송 요청 방법,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 의무 예외사유, 전송대행기관, 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등¹⁾은 요양기관의 명칭, 보험금을 청구할 진료내역 및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컴퓨터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임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②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개정 보험업법상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예외사유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 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으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에 있어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 밖에 위 ①~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
-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다만 해당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정함
- 또한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요양기관 등이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
 -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하되,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밖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보험 및 의료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가, 보험개발원 임직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전산 청구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 안전하고 편리한 전산 청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관련 자료제공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의 범위,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과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 관련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함
 -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표 1>과 같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표 1〉 자료 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자료의 범위

구분	내용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단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에 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심사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심사,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및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심사, 제57조에 따른 장애급여의 지급·심사,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심사,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장애연금의 환수에 한한다)에 관한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에 따른 감독·검사 대상 기관에 대한 책임보험금, 의무보험금, 공제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가입정보 및 인터넷 접속에 관한 정보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환자의 병력·상병·건강 상태 등과 진료상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정함
 - 해당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A)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 함; ①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서를 확인하여 고지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확정(이하 '고지대상자'), ② 보험료 할증 등 해당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사실 확정, ③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등 후속절차에 대한 고지
 - 고지대상자가 해당 보험사기 사건 이후 다른 보험회사(B)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다른 보험회사

도 위와 같은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A)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와 피해사실을 알려야 함²⁾

- 피해보험회사 등(A와 B)은 고지대상자의 신속한 보험사기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내용을 고지대상자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 통보할 수 있음
- 그 밖에,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음

○ 2024. 4. 1.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 공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과실비율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로 규정함
-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의 외부 위탁 시 일정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기준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 위탁 대상 업무 범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보험회사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비율은 각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0%를 말함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의 외부 위탁 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데(손해사정 위탁계약서 미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등), 개정안에 의하면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됨
-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해당 교육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해당 교육은 최초 등록·신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교육과목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손해사정서 작성 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이외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이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하며, 기타 교육 관련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함
-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면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사항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손익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함

2)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음